

교양 대표교수 운영위원회 규정[개정 2020. 3. 1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양 대표교수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 3. 1.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(개정 2020. 3. 1.)

1.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정기적인 워크숍 운영, 리뷰보드 시행, 교육개선보고서 및 운영보고서 작성 등 질 관리에 관한 사항
4. 각종 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교양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더:함교양대학장,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, 기초교양교육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외부자문위원과 학생위원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.(개정 2020. 3. 1., 2021. 3. 1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내부 위원은 각 이수구분별 교과목을 대표할 수 있는 전임교원과 교양 교과목 개설 및 운영 관련한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 3. 1.)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신설 2020. 3. 1.)

④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양교육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0. 3. 1.)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⑥ 간사는 기초교양교육팀장으로 한다.

제4조 삭제<2020. 3. 1>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[제5조에서 이동 2020. 3. 1]

제5조(운영세칙)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[제6조에서 이동 2020. 3. 1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